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시설총괄과-2254호, 2025. 3. 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공사) ①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대상공종의 구분) 사전심사 대상공종은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와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하며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공사 이외의 공사는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항만공사
4. 지하철공사
5. 공항건설공사
6.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7. 폐수처리장건설공사
8.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 9. 관람집회시설공사
- 10. 전시시설

제4조(사전심사 신청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이라 한다) 제5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다.
- 2.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 공종의 공사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이하 '실적경쟁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적경쟁집행기준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실적보유자로 한다.
- 3.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로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을 적용하는 공사는 동 운용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찰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5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5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제1호, 제3호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라 한다)에 상대 업역으로 참여한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종합·전문업종간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다.

제5조(사전심사기준일 등) ①경영상태 입찰참가 적격 및 [별표2] 및 [별표3]의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③제2항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

‘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6조(배점기준) ①사전심사대상공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분야별 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②당해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평가요소의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③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점수를 포함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평가방법) ①사전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 제4항제3호,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조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②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③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1.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PQ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기업 참여도,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의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별표9]에 따른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2호에 따르는 경우 동일공사의 범위는 실적경쟁집행기준의 [별표]를 준용한다.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이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이라 한다)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별표4]와 같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2호에 따르는 경우 평가기준은 실적경쟁집행기준의 [별표]를 준용한다.

다.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종의 시공실적(이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6]와 같다

라.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이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업종별 시공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7]와 같다

마. 최근 5년간 업종실적(또는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른다.

-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업종실적(또는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자료
- (2)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하여 마감일 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업종실적(또는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증명자료

바.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사.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주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산서로 평가한다.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 (2)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활용실적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 (3)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4)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5)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 등에는 사전심사신청자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심사기준일 이전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을 [별첨양식 14]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시공평가 결과

가.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실적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1)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른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를 제출(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0점 적용
- (2)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

- (3) 상호시장진출 허용 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80점 적용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시공평가된 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라. 시공평가결과에 의한 평가는 '가'목의 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지역업체 참여도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참여지분율과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조정 지분율의 합'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 (1)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공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공종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분율은 시공비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 (2) 가중치 산정방법

$$\text{지역소재기간 가중치} = \text{지역소재일} / 3,650$$

다만,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 (3)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한다.

- (4)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나. 지역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시·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 업체 참여도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신인도

가. 사고사망만인을 평가

- (1) 사고사망만인을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 (2)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합산별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평가요소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하 같다.)에게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2 또는 별첨양식2-1)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시공경험, 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인도,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에 적용한다.

-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공사('주공사'라 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나머지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평가대상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에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적용한다.
5.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

- 가.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설계분야 구성원은 경영상태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 (1) 동일(또는 유사)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2)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및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3호 본문에 따라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평가(시공비율 적용안함)하되, 일부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 (1)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3)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 (가) 종합공사로서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건축공사인 경우 등급별유자격자명 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기술개발 투자비율 대비 해당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구성원 중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 (나) 전문공사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공사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전문공사업평균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 (4)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다.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 라. 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배점한도 미 적용)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배점한도 적용)한다.
- ④지역업체 참여도(또는 가산점)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조정 지분율의 합에 따라 평가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관계없이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조정 지분율은 조정 지분율의 합 산정에서 제외한다.
- ⑤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평가대상업종에 관계없이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평가)로 평가하되, 중소기업 인정(평가) 및 참여지분율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업체의 해당 여부는 심사

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마감일 까지 시스템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도 인정한다.

가. 중소기업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된 경우

나.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공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공종의 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분율 산정 시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제4항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괄·대안입찰공사를 제외)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고, 당해공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건설업체는 당해공사에 지역업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별첨양식2-1>에 따라 평가한다.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도에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	가산점
25%이상, 30%미만	2점
30%이상, 35%미만	4점
35%이상, 40%미만	6점
40%이상	8점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산점을 합산한 후 이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	가산점
12.5%이상, 15%미만	1점
15%이상, 17.5%미만	2점
17.5%이상, 20%미만	3점
20%이상	4점

3. 당해공사가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 및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이거나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로 할지라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까지만 가산 평가한다.
4. 지역업체 배점(가점) 부여를 위한 지역업체 인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별표2] 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지역업체는 제7조제4항제4호나목에 따른다.
 - 나. 제6항 본문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는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전일 해당 시·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만, 제6항 단서조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괄·대안입찰 공사를 제외)의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는 가목을 준용한다.
-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 입찰인 경우 10%미만
 - 다. 가내지 나목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사 입찰공고서에 최소출자비율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출자비율 미만

제9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①사전심사 신청자가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 심사신청서(별첨양식 1)
 2.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첨양식 2)
 3. 공중별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및 자기평점(별첨양식 4)
 4.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별첨양식 8-1)
 5.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보유현황
 6. 제출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7.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표준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사용계획 포함)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8. 입찰공고시 요구한 서류 각1부
- ②사전심사 신청자는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관련서류 제출 생략) 사전심사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마감일 이전에 조달청에 제출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 내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동일 또는 유사 공사실적(시공평가점수 포함)
2.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금액)
3. 최근 5년간 토목, 건축 등 건설산업기본법령과 전기공사업법령 등의 업종 구분에 의한 실적(금액)
4.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5. 경영상태 확인서류
6. 신인도의 가산점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7. 건설기술자 보유 증빙서류
8.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증빙서류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제,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5.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는 제외)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한 경우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 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미만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인 경우 10%미만
 - 다. 가내지 나목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사 입찰공고서에 최소출자비율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출자비율 미만
8.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나. <삭제>
 - 다. <삭제>
 - 라. <삭제>
9.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①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②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규모별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
 - 가.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 원 이상인 공사
 -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BB0) 이상

-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단, 구성원은 B+) 이상
 -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 나.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인 공사
-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B0) 이상
 -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이상(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 다.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500억 원 미만인 공사
-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단, 구성원은 B+) 이상
 -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구성원은 B-) 이상
 -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단,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 라.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영상태 평가는 가목 내지 다목의 공사규모별 분담이행 방식의 경영상태 적격기준을 적용하되, 사전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부계약자가 주계약자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등 입찰의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공고서에 반영하여 부계약자의 적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적격요건은 종합평점 90점 이상(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한다.
- ④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입찰적격자 선정 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 이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⑤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업체 자격의 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보증이행업체는 입찰공고 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영상태부분의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이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심사기준은 입찰공고일 당시 심사기준(사전심사기준, 업체평균비율 등)에 따른다.
3. 경영상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평가에 필요한 보증이행업체의 자료는 보증기관이 보증시공 청구를 조달청에 요청(접수)한 날의 자료로 한다.

제13조(심사결과 통지 등) ①입찰적격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시스템에 공시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시스템에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사전심사 담당자(이하 '심사자'라 한다.)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심사자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기타 사항) ①당해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소수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지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지분율을 적용하되 공동수급협정서상 소수점 산정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업종별 비율과 출자(분담)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나. 전체지분율은 소수점 여섯째자리까지 산정한다.

2.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3.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감율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율을 적용한 후 분야별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수요기관의 공사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건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자구매 기술 (제안서) 평가규정 등 일부개정지침) <제4585호,2009.8.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856호,2011.12.28.>

1.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85호,2014.1.10.>

1. 이 기준은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4년 1월 10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5788호,2014.6.27.>

1. 이 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4년 7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7282호,2017.8.10.>

1. 이 기준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7년 10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8619호,2017.9.29.>

1. 이 기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7년 12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5013호,2018.6.28.>

1. 이 기준은 201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8년 7월 16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980호,2019.3.4.>

1. 이 기준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9년 3월 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168호,2019.4.15.>

1. 이 기준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9년 4월 15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4857호,2019.6.13.>

1. 이 기준은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9년 6월 15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9746호,2019.12.9.>

1. 이 기준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9년 12월 18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신인도 평가 중 나. 11) 관련 평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982호,2020.3.6.>

1. 이 기준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20년 3월 18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 제4항 5호 가. 의 규정 및 [별표 3] 신인도 평가 중 다. 11) 관련 평가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0974호,2020.12.24.>

1.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320호,2021.2.15.>

1. 이 기준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21년 2월 15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130호, 2021.04.12.>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21년 4월 12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사전심사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청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일반 경쟁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제4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8조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2849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심사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청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일반 경쟁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제4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8조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8656호, 2022.09.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22년 9월 26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심사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청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일반 경쟁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제4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8조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1579호,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876호, 2024.02.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입찰 공고를 하는 공사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4397호, 2024.05.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8757호, 2024.09.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254호, 2025.03.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
(제3조에 따른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에 적용)

공 종	구 분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 교량			
A.	·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	○ 길이 100m 이상 A등급 교량	○ 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B.	·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교량 · 경간 50m 이상이 포함된 연륙교, 연도교, 해상교량	○ 길이 100m이상의 A등급교량, 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C.	· 경간 50m 이상 포함 교량, 1,000㎡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 길이 100m 이상 A, B, C등급 교량	
D.	· 500㎡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 길이 100m 이상 A, B, C, D등급 교량	
2) 공항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 10,000㎡ 이상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공사	○ 도로폭 4차로 이상과 길이 1km 이상이 포함된 고속도로, 국도의 신설공사(확·포장공사 포함) ※면적으로 환산적용
나. 청사(여객 및 화물터미널)		○ 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로서 3,000㎡이상의 건축공사	○ 3,000㎡ 이상의 지하철역사
3) 항만 가. 계류시설		○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 준설, 매립 제외	○ 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 준설, 매립 제외
나. 외곽시설		○ 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 준설, 매립 제외	○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간척용 방조제 포함) ※ 준설, 매립 제외

공 종	구 분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4) 지하철(도시철도)		○ 100m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 철도·도로의 200m이상인 터널부분공사
5) 터널공사		○ 철도·도로의 200m이상인 터널부분공사, 100m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지하차도공사 제외)	
6) 쓰레기소각로		○ 소각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기 소각로 · 소각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일소각톤수	
7)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나. 고도처리시설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8)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나. 고도처리시설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9)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집회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시설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운동장체육관		○ 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10) 전시시설(전시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 주)

- 1)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다.
- 2) 사전심사대상 공사의 범위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기준의 공종과 동일 및 유사공사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3) 당해공사에 포함된 교량 또는 터널이 상·하행선으로 구조물이 각각 분리된 경우에는 합산한 규모(또는 금액)를 기준으로 사전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3-1) 교량 또는 터널의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 연장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연장의 1/2로 한다.
 - 3-2) 교량공사에 있어서 등급이 같거나 다른 경우에 평가기준규모와 금액은 사전심사대상 요건 이상인 각 교량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 3-3) 교량의 범위는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교통용 교량을 말한다.
- 4) 지하철공사의 경우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 구간으로 한다.
- 5) 항만공사의 경우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경우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을 사전심사대상으로 하며, 각각의 시설이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추정가격 200억원미만에 해당하는 외곽시설(또는 계류시설)은 주공사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 6)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6-1) 주차장, 기계실등 공용부분은 당해건물의 주용도에 포함(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본다)
 - 6-2) 근린생활시설은 당해건물의 주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 6-3)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6-4) 주용도란 동일 건물내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 7)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제3조에 따른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중)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30	[별표 4 '가' 참조]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중)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22	[별표 4 '가' 참조]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0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16	[별표 8 참조]	
	2) 일반기술자	8	[별표 8 참조]	
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3) 신기술 개발건수	3	A. 2건이상 B. 1건이상 C. 0.5건이상 D. 0.5건미만 E. 없음	3 2 1 0.5 0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3	A. 300억원 이상 B.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C. 200억원 미만 150억원 이상 D. 15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E. 100억원미만 10억원이상 F.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3.0 2.5 2.0 1.5 1.0 0.5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5) 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3	A. 2년내 시공실적 B. 5년내 시공실적 C. 7년내 시공실적 D. 10년내 시공실적	3.0 2.5 2.0 1.5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6)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8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5 7.0 6.5 6.0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10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10 9 8 7 6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지역업체 참여도	조정 지분율의 합	5	A. 40% 이상 B. 35% 이상, 4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5 4 3 2 1
⑤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중소기업 참여도	참여 지분율	4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C. 20% 이상, 30% 미만 D. 10% 이상, 20% 미만	4 3 2 1
⑥ 신인도 (+5, -7점) [별표 3 참조]				

2.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제3조에 따른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괄/대안/기술제한 등의 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5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중)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34	[별표 4 '나' 참조]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별표 4 '다' 참조)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중)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22	[별표 4 '나' 참조]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별표 4 '다' 참조)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1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16	[별표 8 참조]	
	2) 일반기술자	8	[별표 8 참조]	
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3) 신기술 개발건수	3	A. 2건이상 B. 1건이상 C. 0.5건이상 D. 0.5건미만 E. 없음	3 2 1 0.5 0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3	A. 300억원 이상 B.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C. 200억원 미만 150억원 이상 D. 15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E. 100억원미만 10억원이상 F.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3.0 2.5 2.0 1.5 1.0 0.5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5) 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3	A. 2년내 시공실적 B. 5년내 시공실적 C. 7년내 시공실적 D. 10년내 시공실적	3.0 2.5 2.0 1.5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6)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8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5 7.0 6.5 6.0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10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10 9 8 7 6
④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중소기업 참여도	참여 지분율	4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C. 20% 이상, 30% 미만 D. 10% 이상, 20% 미만	4 3 2 1
⑤ 신인도 (+5, -7점) [별표 3 참조]				

3.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제3조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실적제한 공사로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실적제한공사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중)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관급포함)	30	# 참조	
나.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0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7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7 6 5 4
	2) 일반기술자	20	A. 20인 이상 B. 15인 이상 C. 10인 이상	20 16 11
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3) 신기술 개발건수	2	A. 0.5건 이상 B. 0.5건 미만 C. 없음	2 1 0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2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C. 50억원미만 5억원이상 D. 5억원미만 1억원이상	2.0 1.5 1.0 0.5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5)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1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10.0 9.5 9.0 8.5 8.0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10	A. 95점 이상 B. 90점 이상 C. 85점 이상 D. 80점 이상 E. 80점 미만	10 9 8 7 6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지역업체 참여도	조정 지분율의 합	5	A. 40% 이상 B. 35% 이상, 4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5 4 3 2 1
⑤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중소기업 참여도	참여 지분율	4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C. 20% 이상, 30% 미만 D. 10% 이상, 20% 미만	4 3 2 1
⑥ 신인도 (+5, -7점) [별표 3 참조]				

1. 공사실적 평가 : 추정가격500억원 이상의 평가 등급 및 배점

- 평가기준규모 대비 300%이상 30점, 255%이상 27.7점, 210%이상 25.4점, 165%이상 23.1점, 120%이상 20.8점, 75%이상 17.4점, 60%이상 15점

2. 공사실적 평가 : 추정가격500억원 미만의 평가 등급 및 배점

- 평가기준규모 대비 200%이상 30점, 170%이상 27.7점, 140%이상 25.4점, 110%이상 23.1점, 80%이상 20.8점, 50%이상 17.4점, 40%이상 15점

4.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제3조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실적제한 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괄/대안/기술제안 등의 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실적제한공사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5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중)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관급포함)	34	# 참조	
나.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1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7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7 6 5 4
	2) 일반기술자	20	A. 20인 이상 B. 15인 이상 C. 10인 이상	20 16 11
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3) 신기술 개발건수	2	A. 0.5건 이상 B. 0.5건 미만 C. 없음	2 1 0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2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C. 50억원미만 5억원이상 D. 5억원미만 1억원이상	2.0 1.5 1.0 0.5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5)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10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0 9.5 9.0 8.5 8.0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10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10 9 8 7 6
④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중소기업 참여도	참여 지분율	4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C. 20% 이상, 30% 미만 D. 10% 이상, 20% 미만	4 3 2 1
⑤ 신인도 (+5, -7점) [별표 3 참조]				

- # 1. 공사실적 평가 : 추정가격500억원 이상의 평가 등급 및 배점(지역의무는 괄호값 적용)
 - 평가기준규모 대비 300%이상 34점(34점), 255%이상 31점(31.7점), 210%이상 28점(29.4점), 165%이상 25점(27.1점), 120%이상 22점(24.8점), 75%이상 19점(21.4점), 60%이상 16점(19점)
 2. 공사실적 평가 : 추정가격500억원 미만의 평가 등급 및 배점(지역의무는 괄호값 적용)
 - 평가기준규모 대비 200%이상 34점(34점), 170%이상 31점(31.7점), 140%이상 28점(29.4점), 110%이상 25점(27.1점), 80%이상 22점(24.8점), 50%이상 19점(21.4점), 40%이상 16점(19점)

5.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제3조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일반공종공사			기타공종공사		
		배점	등급	평점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 일한 공종그룹의 공사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공종 명시	20	[별표 6 참조]		평가 제외		
나.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20	[별표 7 참조]		40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5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평가제외			좌 동		
	2) 일반기술자	31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C. 10인 이상	31 25 19	좌 동		
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3) 신기술 개발건수	2	A. 0.5건 이상 B. 0.5건 미만 C. 없음	2 1 0	좌 동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2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C. 50억원미만 5억원이상 D. 5억원미만 1억원이상	2.0 1.5 1.0 0.5	좌 동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5)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 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 개발 투자비율	10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0 9.5 9.0 8.5 8.0	좌 동		
③ 시공평가결과 (6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배점한도 적용			좌 동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지역업체 참여도	조정 지분율의 합	5	A. 40% 이상 B. 35% 이상, 4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5 4 3 2 1	좌 동		
⑤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중소기업 참여도	참여 지분율	4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C. 20% 이상, 30% 미만 D. 10% 이상, 20% 미만	4 3 2 1	좌 동		
⑥ 신인도 (+5, -7점) [별표 3 참조]							

6.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제3조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지역의무공종도급, 일괄/대안/기술제안 등의 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일반공종공사			기타공종공사		
		배점	등급	평점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5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종그룹의 공사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공종 명시	20	[별표 6 참조]	평가 제외			
나.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25	[별표 7 참조]	45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5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평가 제외			좌 동		
	2) 일반기술자	31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C 10인 이상	31 25 19	좌 동		
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3) 신기술 개발건수	2	A. 0.5건 이상 B. 0.5건 미만 C. 없음	2 1 0	좌 동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2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C. 50억원미만 5억원이상 D. 5억원미만 1억원이상	2.0 1.5 1.0 0.5	좌 동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5)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1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10%이상 E.10%미만	10.0 9.5 9.0 8.5 8.0	좌 동		
③ 시공평가결과 (6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배점한도 적용			좌 동		
④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중소기업 참여도	참여 지분율	4	A. 40% 이상 B. 30% 이상, 40%미만 D. 20% 이상, 30%미만 E. 10% 이상, 20%미만	4 3 2 1	좌 동		
⑤ 신인도 (+5, -7점)		[별표 3 참조]					

※ 주)

① 시공경험 평가

- 1) 최근 10년간 동일공사실적과 유사공사실적 심사항목은 입찰자가 택일 적용
- 2)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실적증명서는 매 사전심사 신청시마다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공사의 사전심사에서 검증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공종별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조달청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3) 제3조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4) 합병등의 경우 시공경험평가는 '[별표9]의 4. 11)'에 따른다.
- 5) 최근 10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전부터 PQ신청마감일 까지의 준공실적으로 한다.(예시 : 입찰공고일이 2010년8월5일 이고, PQ신청마감일이 2010년9월8일인 경우 시공실적은 2000년 8월 6일부터 2010년 9월 8일 까지의 준공실적)
 - 5-1)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동일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계상한다.
- 6)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외국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경우도 포함)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 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 한다.
- 7) [별표2] 제5호내지 제6호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평가지 평가대상공종은 입찰공고시 명시하며 동일공종그룹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이 외 동일공종그룹 분류 항목은 기타공종공사 평가에 따른다.

구분	평가대상공종	동일공종그룹 분류
토목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수로터널, 관개수로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시설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 8) 경쟁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공된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 9)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9-1) 전문건설사업자의 실적은 업종실적 또는 공종그룹실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 9-2) 당해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 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 9-3) 전문업종별 평점은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점이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 9-4)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전문업종별 평점은 구성원별 평점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점을 합산(시공비율 적용안함)하되, 일부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9-5) 전문건설사업자가 '21년 이후의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배점을 기준으로 9-2) 내지 9-4)에 따라 평가한다.

② 기술능력 평가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식8)에 의하며,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이하 '경력기술자'라 한다),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되거나, 사전심사신청자가 제출(등록)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당해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1-1)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스템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2) 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첨양식 9)

가) 별첨양식8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1-3) 준설공사에 대하여 일반기술자의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평가요소	배점	추정가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액 1,0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인 경우		추정가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평가등급	평점	평가등급	평점	평가등급	평점
일반 기술자	31	A. 16인 이상 B. 12인 이상 C. 8인 이상	31 25 19	A. 12인 이상 B. 9인 이상 C. 6인 이상	31 25 19	A. 9인 이상 B. 7인 이상 C. 6인 이상	31 25 19

1-4) 조경공사인 경우에는 일반기술자평가 시 토목기술자와 조경기술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1-5) 1건 공사가 복합 사전심사대상 공사인 경우 경력기술자인 동일인은 각 사전심사대상 공사에 중복하여 평가한다.
- 2)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제7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다.
 - 2-1)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과 교통신기술과 재난안전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2-2) 신기술개발건수는 신기술보유업체로 평가한다.
 - 2-3)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로서 신기술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활용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 3) 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당해 사전심사에서 제출한 동일 실적(유사실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사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4) 기술개발투자비를 평가 시 건설부분 매출액 또는 기술개발투자비가 '0'인 경우에는 최하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③ 시공평가결과 평가

- 1) 시공평가점수는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가한다.
 - * (계산식)시공평가점수 = {실적규모(또는 금액)×시공평가결과}의 합÷실적규모(또는 금액)의 합
- 2)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 이외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평가한다.

- ⑤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 평점95점이상인 자 B. 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 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 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 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5)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승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승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7)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2 +1
	8)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1 +0.5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등급	평점
	9)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2.0)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1.0 (-1.0) +0.5 (-0.5) +0.5 (-0.5) +0.3 (-0.3) +1.5 (-1.5) +1.0 (-1.0) +1.0 (-1.0) +0.5 (-0.5) +2.0 (-2.0) +1.5 (-1.5) +1.5 (-1.5) +1.0 (-1.0)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 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1~+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1.0 +0.6 +0.3 0.0 -0.5 -1.0
	11)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1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등급	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0.5/건
	14)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5)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16)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1.0 +0.9 +0.8 +0.7 +0.6
	17)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최우수 B. 우수	+1.0 +0.5
	18)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마. 고용 개선 관련	19)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20)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율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22)최저임금법 위반	-2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등급	평점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3)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4)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사. 기타	25)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 조정지분율의 합 A. 10% 이상 20% 미만 B. 20% 이상 3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35% 이상 40% 미만 E. 40% 이상	+1.0 +1.5 +2.0 +2.5 +3.0

※ 주)

-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삭제> 및 소방공사는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는다.
 - 2-1) 전문공사는 '다'목 10)항목만 평가하되, 준설공사는 모든 항목을 평가한다.
- 3)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4)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5) <삭제>
- 6)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 7) <삭제>
- 8) '나'목 3)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달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할 경우로서 평점 90점이상(95점이상 포함)인 자는

- 2점으로 평가한다.
- 9) '나'목 7) 및 8)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 9-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 9-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 9-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10) '나'목 9)의 평가는 조달청이 발표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이 발표한 인센티브 부여기간 내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n차 년도에 해당하는 등급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n차 년도 평가결과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0-1) 평가결과 등급은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협약 이행결과 평가등급을 말한다.
 - 10-2) 조달청은 평가대상 기업이 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기간의 2배 이내 기간 동안 감점할 수 있다.
- 11) < 삭 제 >
- 1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12-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 13) '다'목의 1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 14) '다'목 10)부터 14)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 15)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 15-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 15-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 15-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 15-4)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별첨양식 13]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15-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16)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 16-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 16-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16-3) 신청자가 16-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항에 따라 당해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6-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3조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6-5) 낙찰자가 16-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16-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 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6-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 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Rightarrow 0.88(\text{미사용비율}) \times 1\text{점(가점)} \times 2(2\text{배 감점}) = 1.76 \rightarrow \Delta 1.7\text{점}$
- 16-7) 16-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16-3) 내지 16-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평가에 포함한다.
- 16-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사전심사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 16-9)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16-1) 내지 16-8)은 적용하지 않는다.
- 17) '마'목 19)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18) '마'목 20)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19) '마'목 21)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 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위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 19-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율은 $[(\text{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 + \text{기간제 근로자수} + \text{소속 외 근로자수}) / (\text{소속근로자수} + \text{소속 외 근로자수})]$ 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9-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 건설업)'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율 평균을 말한다.
- 20) '마'목 22)의 평가는 PQ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8.1.1. 이후 최초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21) '바'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3)과 24)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4)로 평가한다. 24)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 21-1) 23)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자료로 평가한다.
- 21-2) 23)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 21-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 21-4)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같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21-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21-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21-7) 24)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21-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무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 22) '사'목 25)의 평가는 당해 공사현장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22-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산업위기지역 업체의 참여지분율과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조정 지분율의 합')로 평가하며, 그 외 평가방법은 제8조제4항을 적용한다.

[별표 4]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공사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별표2] 제1호 및 제2호 관련)

제1호 : 교량(B등급)공사

심사항목	구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100	900	750	600	400	250	2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6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20	
	300억원 미만	300	250	200	150	120	100	8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100	900	750	600	400	250	2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6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20	
	300억원 미만	300	250	200	150	120	100	8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주)

- 1) 평점 '가'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평점 '나' : 일괄/대안/기술제안 등의 공사, 평점 '다'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적용
- 2) 심사항목의 'A'와 'B'는 입찰자가 택일하여 적용
- 3)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1]에서 정한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실적(준공금액 + 도급자설치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한다.
- 4) A등급의 금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F등급의 금액은 당해 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한다.(예 : PQ부분의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동일실적 금액이 900억원인 경우 B등급으로 평가)
- 5)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인하여 경쟁성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시공실적 금액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호 : 교량(C등급 이하)공사

심사항목	구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300	1,900	1,400	900	7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000	930	650	5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900	1,500	1,200	800	650	480	400	
	300억원 미만	700	530	370	290	240	160	14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300	1,900	1,400	900	7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000	930	650	5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900	1,500	1,200	800	650	480	400	
	300억원 미만	700	530	370	290	240	160	14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3호 : 지하철공사

심사항목	구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2,500	2,100	1,700	1,400	1,000	600	5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1,900	1,600	1,300	1,000	800	500	400	
	500억원 미만	1,200	1,000	800	650	450	300	25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2,500	2,100	1,700	1,400	1,000	600	5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1,900	1,600	1,300	1,000	800	500	400	
500억원 미만		1,200	1,000	800	650	450	300	25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4호 :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800	700	600	450	350	200	16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30	
	500억원 미만	350	300	250	200	150	100	8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800	700	600	450	350	200	16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30	
	500억원 미만	350	300	250	200	150	100	8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5호 : 터널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 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100	1,900	1,500	1,100	9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900	2,500	2,000	1,600	1,400	1,000	8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400	900	700	600
	300억원 미만	700	550	410	290	240	180	15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 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100	1,900	1,500	1,100	9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900	2,500	2,000	1,600	1,400	1,000	8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400	900	700	600
	300억원 미만	700	550	410	290	240	180	15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6호 : 항만(계류시설)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 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2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50	300	250	200	150	100	7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70	5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유사한 종 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2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50	300	250	200	150	100	7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70	5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7호 : 항만(외곽시설)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 사와 동일한 종 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900	750	600	500	350	250	18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20	
	300억원 미만	300	250	200	170	140	110	8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 사와 유사한 종 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900	750	600	500	350	250	18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20	
	300억원 미만	300	250	200	170	140	110	8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8호 : 공연·집회시설

심사항목	구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600	450	350	250	190	150	12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450	380	300	230	180	130	1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50	300	250	200	150	100	7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80	5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600	450	350	250	190	150	12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450	380	300	230	180	130	1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50	300	250	200	150	100	7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80	5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9호 : 관람시설

심사항목	구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600	500	400	300	250	150	1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00	250	200	150	120	80	6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50	210	170	130	100	70	50	
	300억원 미만	200	160	120	90	60	50	4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600	500	400	300	250	150	1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00	250	200	150	120	80	6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50	210	170	130	100	70	50	
	300억원 미만	200	160	120	90	60	50	4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10호 : 전시시설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 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00	250	200	150	100	50	4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50	200	150	130	100	50	40	
	500억원 미만	200	150	130	120	70	50	3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유사한 종 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00	250	200	150	100	50	4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50	200	150	130	100	50	40	
	500억원 미만	200	150	130	120	70	50	3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11호 : 공항(여객 및 화물터미널)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 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200	1,000	800	650	450	300	24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800	700	600	450	350	200	160	
	500억원 미만	350	300	250	200	150	100	8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유사한 종 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200	1,000	800	650	450	300	24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800	700	600	450	350	200	160	
	500억원 미만	350	300	250	200	150	100	8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12호 : 하수 · 폐수종말처리장(또는 고도처리시설)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100	900	750	600	400	250	18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900	750	600	500	350	200	1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20	
	300억원 미만	400	350	300	250	150	100	6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100	900	750	600	400	250	18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900	750	600	500	350	200	1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20	
	300억원 미만	400	350	300	250	150	100	6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13호 : 쓰레기소각로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500억원 이상	600	500	400	300	250	150	9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400	350	300	250	150	100	6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50	3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500억원 이상	600	500	400	300	250	150	9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400	350	300	250	150	100	6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50	3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별표 5] <삭제>

[별표 6]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대상공사	보정계수(a)				평점 = (실적계수(C) × 10) + 10
	교통	수자원	주거	비주거	
일반공사, 1등급공사	1.00	1.00	1.00	1.00	실적계수(C)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 만점계수(B)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만점계수(B) = (평가대상 동일공종그룹의 추정가격) × 10 × 보정계수(a)
2등급공사	0.30	0.30	1.00	1.00	
3등급공사	0.22	0.20	0.30	0.70	
4등급공사	0.13	0.18	0.10	0.55	
5등급공사	0.10	0.10	0.05	0.35	

※ 주)

- 1)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2)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 3)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3-1)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며, 당해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 3-2)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동일공종그룹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동일공종그룹실적은 '만점계수(B)' 까지만 인정한다.
 -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동일공종그룹실적은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3-3)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 시 만점계수(B)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평가대상 동일공종그룹의 추정가격) × 10 × 보정계수(a) ×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21년 이후의 종합공사 실적'으로 우선 평가하여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하여 나머지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 시 만점계수(B)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평가대상 동일공종그룹의 추정가격) × 10 × 보정계수(a) - 종합공사 실적} ×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별표 7]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대상공사	공종	보정계수(a)	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방법
고난도포함공사, 실적제한, 일반공사, 1등급공사	토목 건축 기타	a=1.00	$\text{실적계수(C)} = (\text{최근 5년간 업종실적}) / \text{만점계수(B)}$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text{만점계수(B)} = (\text{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times 5 \times \text{보정계수(a)}$
2등급공사	토목	a=0.50	
	건축	a=0.80	
3등급공사	토목	a=0.38	
	건축	a=0.40	
4등급공사	토목	a=0.27	
	건축	a=0.33	
5등급공사	토목	a=0.16	
	건축	a=0.22	
[별표2]제1호 및 제3호의 평점(10점)			
[별표2]제2호 및 제4호의 평점(11점)			평점 = 실적계수(C) × 11
[별표2] 제5호의 일반공종공사평점(20점)			평점 = 실적계수(C) × 20
[별표2] 제6호의 일반공종공사평점(25점)			평점 = 실적계수(C) × 25
[별표2] 제5호의 기타공종공사평점(40점)			평점 = 실적계수(C) × 40
[별표2] 제6호의 기타공종공사평점(45점)			평점 = 실적계수(C) × 45

※ 주)

- 1)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2) 조경·시설물유지보수·궤도공사의 평가방법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심사항목	구 분	보정계수(a)	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방법
최근 5년간 업종실적 (금액)	조경공사	a=0.23	$\text{실적계수(C)} = (\text{최근 5년간 업종실적}) / \text{만점계수(B)}$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text{만점계수(B)} = (\text{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times 5 \times \text{보정계수(a)}$
	시설물유지보수공사, 궤도공사	a=0.11	
	[별표2] 제3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
	[별표2] 제4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1
	[별표2] 제5호의 기타공종 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40
	[별표2] 제6호의 기타공종 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45

3)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업종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만점계수(B)' 까지만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 시 만점계수(B)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 5 × 보정계수(a) ×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21년 이후의 종합공사 실적'으로 우선 평가하여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하여 나머지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 시 만점계수(B)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 5 × 보정계수(a) - 종합공사 실적} ×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4) 준설공사의 평가방법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가대상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준설 공사	500억원 이상	1000	800	600	500	400
	500억원 미만~300억원 이상	900	700	500	400	300
[별표2]제5호의 기타공종공사 평점		40	36	32	28	24
[별표2]제6호의 기타공종공사 평점		45	41	37	33	29

5)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표 8] 기술자보유상황평가 ([별표2]제1호 및 제2호 관련)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경우	
			평가등급	평점	평가등급	평점	평가등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16	A. 4.5이상 B. 3.3이상 C. 2.6이상 D. 1.3이상	16.0 13.5 11.0 8.5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6.0 13.5 11.0 8.5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6.0 13.5 11.0 8.5
	2)일반기술자	8	A. 26인이상 B. 20인이상 C. 13인이상	8.0 5.5 3.0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8.0 5.5 3.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8.0 5.5 3.0

[별표 9]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 적용범위

- 1) 제7조제4항제1호의 평가에 적용한다.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목 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공사실적 등의 제출방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 1) 시공실적의 증명은 별첨양식 5, 5-1 또는 6'에 따른다.
- 2) '1)'의 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장이 '1)'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 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 3) 공사지역별 소관 협회
 - 가) 국내공사 : 건설협회등 관련협회
 - 나) 국외공사 : 해외건설협회
- 4) 외국인 건설사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바'목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5) 하도급공사 : '1)'과 '2)'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3조에 따른다.

3.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 1)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및 금융거래내역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2)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인 경우 건축물대장)
- 3) 시공실적증명서에 전체공사 시공금액(준공 및 관급), 전체실적 공종과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시공규모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도면 및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 4) 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 5)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 6)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번역 및 공증서류

4. 시공실적 심사기준

1) 공통사항

- 가) 심사의 대상 : 심사기준일 현재 준공된 실적
- 나)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업체에 있다.

2) 시공실적의 실적규모 인정

1건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당해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중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3) 시공실적의 실적금액 인정

- 가) '2)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 설치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써,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사전심사(실적심사)를 신청한 경우 동 실적은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인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며, 적합한 경우 각 구성원의 실적은 인정받은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또는 하도급 내용)을 곱한 후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

- ㉠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㉞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㉟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 5) 공동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인정
-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사전심사(실적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은 동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실적(또는 하도급내용)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6)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 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부분의 실적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만, 2020.12.31. 이전(민간공사는 2021.12.31. 이전) 발주한 공사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한다.
 - 나)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마)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 받아 시공한 실적만 인정한다.
 - 바) 하수급자가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한 부분의 실적의 1/2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7) 공사의 부분시공 및 입찰 경쟁성 확보 등에 대한 실적인정
- 가) 실적보유자가 10개사 미만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 당해공사가 심사기준일 현재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을 각각 50%를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완성부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
 - ㉡ 공동계약 또는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당해 공사대비 50%이상이거나, 이번 발주공사의 50%이상에 해당되는 시공실적.
 - ㉢ 당해 심사기준일 기준 최근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공된 시공실적
 - 나)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 8) 계속공사로 준공한 공사의 실적인정
 단일구조물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별첨양식5'의 '주) 6'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9)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이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은 인수 사용일을 준공일로 하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0) 업종별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11) 합병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합병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에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계약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나머지 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나머지 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5. 붙임

- 가.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별첨양식 5)
 나.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별첨양식 6)

<별첨양식 1>

사전심사 신청서

- 공사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 요 기 관 :
- 입찰일시 : 20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귀청 등록자료 포함)가 귀청 심사기준에 저축되면 귀청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붙임 : 1. 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2. 공종별 동일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1부
3. 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4.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사항(제7조제3항 관련)
5.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6. 기타첨부서류 각1부
(자기평가기술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조 달 청 장 귀 하

〈별첨양식 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관 리 번 호		수요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 및 그 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시 공 비 율(%)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동일(또는 유사)공사실적 (금액)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⑨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⑩5년간 업종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⑪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						
⑫경영상태 평가	등급평가일					
	등급구분(회사채,기업어음,신용평가)					
	평가받은 신용장부채					
	등급현황					
⑬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⑭신인도 등록내용						
⑮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조달청에 등록된 실적 등의 내용으로 평가 희망시는 해당란에 조달청 등록내용대로 평가 희망을 기재할 것
 4.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5. 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업종비율 및 출자비율(분담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전체지분율은 소수점 여섯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

〈별첨양식 2-1〉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주계약자관리방식)

가. 대상공사

관 리 번 호		수요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분 담 내 용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⑥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⑦동일(또는 유사)공사실적(금액)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⑧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⑨5년간 업종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⑩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						
⑪경영상태 평가	등급평가일					
	등급구분(회사제,기업어음,신용평가)					
	평가받은 신용정보업체명					
	등급현황					
⑫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⑬신인도 등록내용						
⑭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 주) :1. 분담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분담은 불가함.
 3. 조달청에 등록된 실적 등의 내용으로 평가 희망시는 해당란에'조달청 등록내용대로 평가 희망'을 기재할 것
 4.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5. ③분담내용은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 부] 분 담 내 용(예 시)

○ 공동수급체 공사참여지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포함) 기준)

- 총 공사 참여지분율

업종(업종비율)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 (종합)	구성원 (종합)	구성원 (전문)	계
① 종합 건설업	④토목공사업 (주공사) (60%)	60%	30%	10%		100%
	건축공사업 (10%)	100%	0%	0%		100%
	조경공사업 (10%)	0%	100%	0%		100%
② 건설법 이외 업종	전기공사업 (5%)	0%	100%	0%	0%	100%
	정보통신 공사업 (5%)	0%	0%	100%	0%	100%
	소방공사업 (5%)	100%	0%	0%	0%	100%
③ 전문 건설업	토공 (5%)				100%	100%
구성원별 총공사 참여비율의 합계 ①+②+③		51.00%	33.00%	11.00%	5.00%	100%
주공사참여비율의 합계 ④		60.00%	30.00%	10.00%	0%	100%

<별첨양식 3>

업 체 현 황 조 서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보유 등록(면허)현황					
업 종	등록(면허)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 평가액	평가 순위	비 고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철강제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조경공사업					
해의건설업					
전기공사업					
전 기 통 신 공사업	일반				
	별 종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소음진동방지시설업					
오수처리시설업					
소 방 시 설 공사업	전문				
	일 반	기계			
		전기			
전문 건설업					

위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확인·제출·통보·신고·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첨양식5〉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동일(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I.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확장공사(), 개·보수공사() ※해당란에 ○표							
	전기, 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감리(), 품질,공사관리(), 시운전(), 기자계제작설치(), 기자재설치(), 기타() ※해당란에 ○표							
II.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 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중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중 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대비 원도급금액 포함)	*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 + 관급)			
Ⅲ.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 신청인의 주소 : 회사명 :			
위 내용을 증명함 - 확인자의 소속 : 성명 : (인) 연락처 : - 발급기관명 : (직인)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사이트장(간인)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첨양식 5-1〉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동일(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I.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3)발주기관 (발주자)		
2)공사위치					
4)시 공 자 (대 표)	회사명		등록 번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번호		
5)계약 및 준공 (총공사기준)	계약일자		준공 금액		
	착공일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준공일자				
6)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	인수사용일		실 적 규 모		
	인수사용 금액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공사성질	설치【신설(), 이설(), 증설(), 개설(), 조정()】공사, 보수공사(), 교체공사() ※해당란에 ○ 표				
8)실적종류	설계(), 시공(), 감리(), 기타() ※해당란에 ○ 표				
9)공동계약 여부	단독계약(),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해당란에 ○ 표				
10)하도급 유무	하도급 있음(), 하도급 없음() ※해당란에 ○ 표				
II. 전체 시공실적 규모					
11)입찰예정공사의 입찰공고서상 인정실적 과 일치하는 시공 실적 규모	(공고서와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12)기타시공실적규모					
III. 공동수급 내용 ※ 구성원 전원의 날인을 필하고, 각 란별 구분하여 작성 (빈란은 '해당없음' 기재)					
구 분	1.시공자(대표)	2.시공자	3.시공자		
1)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대 표 자	(인)	(인)	(인)		
3)지분율(%)	%	%	%		
4)준공금액					
5)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1) 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6)공동수급체별 실적 규모					
※ 위의 공동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공동계약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첨양식 6〉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I.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대표)		3-1)회사명			3-2)등록번호	3-3)대표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금 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2) 착공일자		4-5) 계약금액		4-2) 착공일자	4-5) 계약금액
		4-3) 준 공 예정일자		4-6) 관급금액		4-3)준공 예정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확장공사(), 개·보수공사() ※해당란에 ○표				
		전기, 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 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감리(), 품질,공사관리(), 시운전(), 기자재제작설치(), 기자재설치(), 기타() ※ 해당란에 ○표					
II.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 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전체공사 시공금액(도급 자설치관급 포함)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3-2) 시공평가점수		시공 중 평가결과(점수) 점					
4)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 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실적 공종 또는 사 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 공규모 및 금액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5)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전체공사의 시공내용, 공법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6)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시공내용,공법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7) 하도급 내용(하도급대비 원도급금액 포함)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자 면허								
7-3)하도급 공사 규모 및 금액								
7-4) 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시공내용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 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III. 불 입								
1) 기타 당해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이 각각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위 내용과 같이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신청인의 주 소 : _____</p> <p>회 사 명 : _____ 대 표 : _____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위 내용을 증명함</p> <p>- 확인자의 소속 : _____ 성 명 : _____ (인) 연락처 : _____</p> <p>- 발급기관명 : _____ (직인)</p>								

※ 주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사이트장(간인)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함.
-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 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첨양식 7>

시설공사 ()년간 업종(동일공종그룹)시공실적 명세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5,3)년간 (동일공종그룹)공사실적 평가관련)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번호				<u>사업자등록번호</u>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별 등록 번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년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만원)							
구 분	동일공종그룹별 (또는 업종별)	건수	실적금액	비 고			
20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 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0년(5년,3년)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업종(동일공종그룹) 관련 공사만 기재 예1)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일 경우 건축만 기재 예2) 동일공종그룹은 [별표2]주)7)에 따라 구분하여 표기(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등) 3.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 4. 실적금액은 당해연도의 실적금액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첨양식 7-1을 사용하며 실적증명내용에 업종(면허)별(또는 동일공종그룹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함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 계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동일공종그룹)준공실적 매							
위와 같이 최근 10(5,3)년간 우리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동일공종그룹)시공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실적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 등록후 실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7-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첨양식 7의 붙임 서식)

I.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업종 및 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 약 금 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5)계약의 종류	원도급(), 하도급(), 기타() ※해당란에 ○표		
II.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 공 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업종(등록)별 00년도 공사내용			
5)업종별 00년도 시공금액	00업종		
	00업종		
	00업종		
III. 붙 임			
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20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직인)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별첨양식 8-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합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접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생년월일	기술자등급	공 사 명	참여기간	접수	비고
								증명서부 첨
합 계								

<별첨양식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사전심사 대상공종	
성 명		생년월일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 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년 월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기간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일수
					담당업무 (책임정도)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 합산기간 (1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월을 계산)					년 월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직인)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 1) 경력기술자는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별표1] 또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 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 경력기술자 평가의 동일 및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은 근무 회사의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공사현장 자체가 [별표1] 또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됨.
-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 부분삭제 > 기술자등급 기재

<별첨양식 10>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업종별 실적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평가액	토목평가액	건축평가액
1.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자료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	산출근거(단위 : 천원)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 발급기준: 201 년 월 일 기준, 결산서를 기준으로 발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년도	년도	년도
업종별			

위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00 협회장 (인)

<별첨양식 1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에 기재된 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1.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 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14>

신청분야 (해당란 √ 표)	건설신기술 <input type="checkbox"/> 환경신기술 <input type="checkbox"/> 교통신기술 <input type="checkbox"/> 재난안전신기술 <input type="checkbox"/>	발급번호				
건설(또는 환경, 교통, 재난안전)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 증명서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기술 개발현황						
보유신기술(지정번호)		00건(제000호, 제000호)				
■ 활용실적						
지정번호	활용 년도	고시 일자	만료 일자	활용 건수	활용 금액 (천원)	
제000호						
합계				00건	000	
■ 미보유 신기술 활용실적						
구분	지정번호	활용 년도	고시 일자	만료 일자	활용 건수	활용 금액 (천원)
신기술 활용실적						
소계					0건	00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 또는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또는 국가 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6조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또는 한국방재협회장 (직인)						